D R &
A J 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 9 Vol. 36



P&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9 2. 소관법률

Ⅱ.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0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1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0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2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33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6 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7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39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42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5 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60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7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8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0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3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6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6
89 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94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95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8 별첨 1.용어해설

2.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특집

1. 구성
2.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30 | 현원 30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12 | 비교섭단체 1



위원장
윤 관 석

선 거 구 인천 남동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20대,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경기 남양주시을
재선(20대,21대)



위원
김경만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김성환
서울 노원구병
재선(20대,21대)



위원
김용민
경기 남양주시병
초선(21대)



위원
김정호
경남 김해시을
재선(20대,21대)



위원
김회재
전남 여수시을
초선(21대)



위원
박영순
대전 대덕구
초선(21대)



위원
송기헌
강원 원주시을
재선(20대,21대)



위원
신영대
전북 군산시
초선(21대)



위원
양이원영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동주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초선(21대)



위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초선(21대)



위원
이장섭
충북 청주시서원구
초선(2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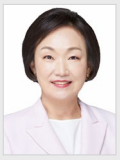
위원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초선(21대)



위원
홍정민

경기 고양시병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초선(21대)



위원
권명호

울산 동구
초선(21대)



위원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재선(20대,21대)



위원
노용호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박수영

부산 남구갑
초선(21대)



위원
양금희

대구 북구갑
초선(21대)



위원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초선(21대)



위원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초선(21대)



위원
이철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재선(20대,21대)



위원
정운천

비례대표
재선(20대,21대)



위원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초선(21대)

무소속



위원
양향자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사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창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전엠씨에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	계량에 관한 법률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광산안전법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7	광업법
	8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0	국가표준기본법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5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6	대외무역법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8	대한석탄공사법
	19	도시가스사업법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1	무역보험법
	2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5	방위사업법
	2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0	산업디자인진흥법
	31	산업발전법
	32	산업융합촉진법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산업표준화법
	35	상공회의소법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7	석탄산업법
	3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3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1	송유관 안전관리법
	4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47	에너지법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5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53	외국인투자촉진법
	5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55	유통산업발전법
	56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59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61	전기공사업법
	62	전기사업법
	63	전기안전관리법
	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	전력기술관리법
	66	전시산업발전법
	67	전원개발촉진법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69	제품안전기본법
	7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7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7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5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76	집단에너지사업법
	7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7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7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80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82	한국가스공사법
	8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84	한국석유공사법
	8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86	한국전력공사법
	8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8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9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9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9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93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
	9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95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96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	기술보증기금법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2	소상공인기본법
	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9	중소기업기본법
	2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허청	1	디자인보호법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발명진흥법
	5	변리사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상표법
	8	실용신안법
	9	특허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사기방지 기본법안
		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청와대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O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O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임금법안
		1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2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O	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경제특별위원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905호



윤 상 현

선 거 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4선(18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1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2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7157호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1.	제안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안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 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수동소득: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주식 ·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 · 항공기 · 장비의 임대나 투자신탁 ·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과 관련된 일정 자산의 매각손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안 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안 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안 제70조 및 제71조 신설)

1)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아.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안 제72조 및 제73조 신설)

1)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

3)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안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 · 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차.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안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

1)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도록 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 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카.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안 제88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05호



김 승 수

선 거 구	대구 북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2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법인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4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81호



용 혜 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기본소득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인사 청문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1.	제안

제안이유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한편으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정임.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중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석유 사업 부문에 대해 소위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법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들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 세율을 과세표준의 50%로 정함(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나. 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초과이득세가 기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안 제1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7165호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1. 제안

제안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안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18조의2 및 현행 제18조의3 삭제, 안 부칙 제15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안 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안 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안 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75조의7)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83호



김 영 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은 2009년 한국 시장에 출시된 이래 우리 일상생활을 모두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됨.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운영체제-앱 마켓-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에 충성고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스마트폰 이전에는 많은 제조사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짐.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특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새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결국 국민의 통신비용으로 다시 전가됨으로써 통신기본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17호



윤 영 찬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34호



양 금 희

선 거 구	대구 북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31.	제안

제안이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계의 공장 신 · 증설이나 천문학적 투자 계획 발표,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주 52시간제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어도 관련 대책은 부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첨단전략산업의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해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35조 등).

9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19호



노 웅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08.	제안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증가함. 평일 오후 늦은 시각 또는 주말 · 공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10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66호



임 이 자

선 거 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30.	제안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모든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됨.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임.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면 이륜차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에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등록된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각각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음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규정돼 있고 인터넷 원격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한돼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원격교육의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제3항 신설).

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하며, 주행 중 원격교육 방지 등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1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26호



양 금 희

선 거 구	대구 북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3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의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용기에 잔량이 소량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처리 ·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를 할 경우 인허가 · 법정교육 · 보관시설 · 검사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보관 · 취급장소 · 시설 등의 보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예외 없이 지역주민에게 물질의 유해성 및 사고 위험성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의 방법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과 함께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설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은 해당 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지절차로 주민불안감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23조의3제2항 단서 신설).

12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00호



김 정 재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북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24. 제안

제안이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22.1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구조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감리 부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중(公衆) 5명 이상 사망 공중(公衆) 3명 이상 사망 시,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83조제7호의2).

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에 대상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13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03호



민 홍 철

선 거 구	경남 김해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2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조사에 따라 결함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자동차들은 최대 배터리 충전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차주들은 광고 · 설명 등을 통해 고지받았던 차량의 최대 주행가능거리보다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차량 성능 저하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14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891호



진 선 미

선 거 구	서울 강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8.17. 제안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원유(나프타)값이 55.3%(2021년 1월 508.5$에서 2021년 10월 789.6$) 급등하였고, 철광석과 펄프는 각 172.2%, 55.5%의 변동율을 보임.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① 원자재 기준가격 및 ②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려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3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3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4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106호



강 훈 식

선 거 구	충남 아산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8.19.	제안
상임위원회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9.0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령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정기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 및 검사·점검방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한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계약해지 또는 전기공급중지를 요청 또는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및 제42조의제1항제6호 신설 등).

참고자료

[표 1] 전기설비 공사계획 사전검토 및 수수료 관련 현행 및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 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8조
		수수료	X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42조
	신고	권한	안전공사	안전공사	
		사전 검토	○(내부규정)	법률에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8조
		수수료	X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4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 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경미한 변경 신고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 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신고	권한	시·도지사	안전공사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소영의원안) 제98조
		사전 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표 2] 분야별 승인·허가 전 사전검토제도 및 수수료 운영 사례

구 분	관련 법령	사전검토 내용	검토 기관	수수료
고압가스	고압가스법 (제11조)	시설공사계획 승인·신고 전 사전검토	가스안전공사	부과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의2)	액화석유가스 공사계획 전 기술검토	가스안전공사	부과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	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가스안전공사	부과

수도시설	수도법 (제4조제3항)	수도시설 정비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국환경공단	미부과 (정부 출연금 지원)
의약품	약사법 (제35조의2)	의약품 허가전 사전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사전검토팀에 포함)	부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9월)	평균 증가율 (18년~20년)
인가(건)	인가	39	5	5	3	-64%
	변경인가	1	0	0	2	-100%
	소계	40	5	5	5	-65%
신고(건)	신고	22,915	21,544	18,490	16,751	-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4]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건수

(단위: 건)

구 분	'18년	'19년	'20	'21년(9월)	평균 증가율 (18년~20년)
기술검토 건수	22,955	21,549	18,495	16,756	-10%
개선 건수	3,826	3,079	2,015	-	-27%

* 전기안전공사 통합정보시스템 교체로 인해 개선건수 미집계('20년 8월 이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5]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건수 및 수수료 총액

구 분		'18	'19	'20	평균증가율
사업용	사용전 검사건수	20,629	32,486	39,737	43.9%
	수수료(천원)	8,853,343	10,526,120	13,065,005	29.6%
자가용	사용전 검사건수	48,009	48,058	46,878	-1.1%
	수수료(천원)	21,247,670	21,002,924	21,072,514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6]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의 행정제재수단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표 7] 현행 정기검사와 개정안의 안전진단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안전진단
범 위	• 고압이상 수전설비	• 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부하설비) • 사업용설비 준공시험 또는 정기시험
수행주기	• 1년~4년	• 연1회 이상(필요시)
업무수행 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 진단기업
처리기준	• 기술기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기준 적합 여부	• 기술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 • IEC, IEEE 등 국제규격 적합 여부 • 전기설비 노후도,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타 국내·외규정 적합 여부
검사 (진단) 항목	• 전기설비 검사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절연내력 - 보호계전기 동작상태 - 절연유 내압 - 차단기 동작상태 - 발전기운전 및 절체 적정성 등	• 전기설비 정전 및 운전상태 등 진단 - 법, 기술기준, 설계서에서 규정한 항목 - 전력계통 보호협조 분석 - 적외선 열화상 진단 - 전원품질분석 - 절연유 가스분석 - 자외선코로나 영상 진단 - GIS설비 SF6 가스 진단 - 차단기 진단 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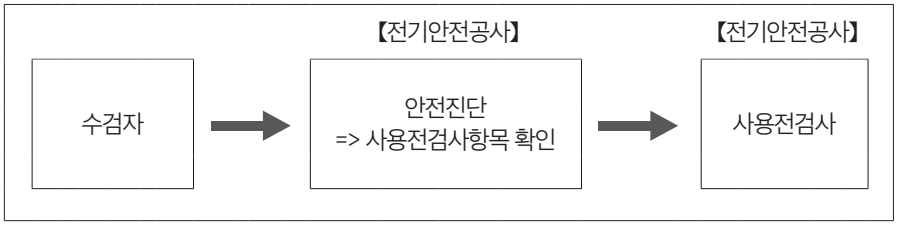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8] 다른 분야 안전진단 운영 사례

분 야	관 련 법 령	법 률 조 항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항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도로, 해사, 항만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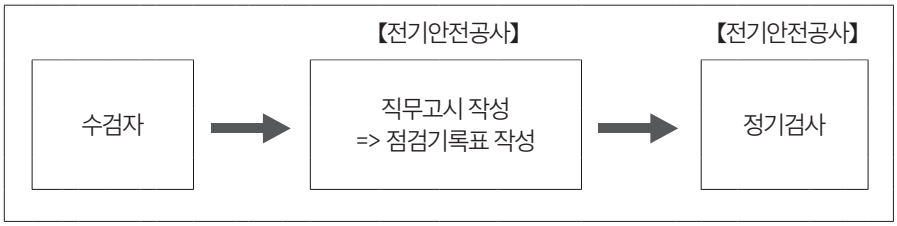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9] 개정안 도입시 우려사항(사용전검사 관련)



자료: 한국전기설계협의회등

[표 10] 개정안 도입시 우려사항(정기검사 관련)



자료: 한국전기설계협의회등

[표 11] 분야별 정부(지자체 포함)의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사례

분야	관련법령	업종	허가권자	위탁기관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전기공사업 (등록)	시·도지사	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용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산업부장관	제품안전관리원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산업부장관	에너지공단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도지사	정보통신공사협회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 (등록)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문화	문화산업법 (제52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문체부장관	콘텐츠진흥원
수도	수도법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 (등록)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	시·도지사	소방시설협회
주택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록)	국토부장관	주택관리협회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시·도지사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
골재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업 (등록)	시·도지사	골재협회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12] 무등록 업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입법례 및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 · 시공업을 한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두 번째, 강훈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자가용 전기설비인가 · 신고 전 사전기술검토를 법률에 상향 및 해당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 사전기술검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전기안전공사가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또 관련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포함된 사전기술검토에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조세 등으로 충당하기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서 사전기술검토할 때 그리고 공사 이후 사용 전 검사 시에 수수료를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한정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전기안전관리법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강훈식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발의가 된 법안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약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님께는 상의를 드렸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번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다음 번에 논의해도 괜찮다는 그런 답을 저희가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기술검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안전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법이 이 법이 있고 또 하나 뒤에 가면 전기사업법에도 또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법은 다음 번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한정



예.

■ 정일영 위원



저도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전기술검토 근거 신설하는 거 하고 안전등록제도 도입, 수수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박수영 위원



발의하신 강훈식 의원님도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혹시나 사정이 되면 양쪽에 지금 걸려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 담는 걸 충분히 하면 좋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284호



송 갑 석

선 거 구	광주 서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8.26.	제안
상임위원회	2020.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1.1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1.11.30.	상정
	2022.09.06.	상정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을 혁신하는 스마트공장 중심의 제조혁신 전략을 시행 중임.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수출의 80%, GDP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이나, 디지털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제조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개별 공장 단위로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수요는 높은 반면 제조데이터의 생산 · 수집, 가공 · 분석, 공유 · 유통 등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규가 없어, 기업이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움.

이에 따라, 동 법안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수립 ·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제7조).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0조)

라.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 운영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가치사슬상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함(안 제15조).

바.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16조).

사. 표준 보급 · 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제협력,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스마트제조혁신 기반을 조성함(안 제17~23조).

아.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권한의 위임 ·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24~28조).

참고자료

[표 1] 스마트공장 연도별 보급계획 및 보급현황

(단위 : 개)

구분	14~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급계획	2,800	2,200	2,800	4,400	5,600	6,000	6,200
누적	2,800	5,000	7,800	12,200	17,800	23,800	30,000
보급현황	2,800	2,203	2,900	4,757	-	-	-
누적	2,800	5,003	7,903	12,660			

[표 2]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1]

(단위 : %, 명)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 증가율	품질 향상률	원가 감소율	납기 준수율	고용 증가	매출액 증가율	산업재해 감소율
전체	30	43.5	15.9	15.5	3	7.7	18.3
기초	31.2	42.7	16.1	15.8	3.1	10.6	15.3
중간1	26.3	46.2	14.3	13.8	2.1	0.6	29.4
중간2	23.4	55.8	39.2	22.9	10.8	20.5	46.2

[표 3] 제조데이터별 정의[2]

No	구분	정의	활용방안
1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 • 제조 운영상 생성되는 운영데이터로 MES를 통해 전사적 공정에서 데이터가 획득됨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로도 활용 가능
2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결합한 것을 의미	• 제조 운영에 있어 변화하는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 수월 • 영업에서도 실시간으로 제조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1) 18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 분석 결과(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 「제조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KAIST, 2010.4

3	고객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을 가리키는 것 • (비정형) 제품 사용후기	•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느낌,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활용

[표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 규정

안 제8조제1항의 지원사업	개별 지원사업 규정	출연 · 지원근거
제2호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안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
제3호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안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제13조(제조데이터 풀랫폼 구축 · 지원)	○
제4호 디지털 클러스터의 조성	안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
제5호 공급기업의 육성	안 제16조(공급기업 육성)	○
제6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안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표 5]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수준	개념 및 유형
Lv5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 공장
	- IoT, CPS 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Lv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 - 분야별 관리시스템의 상호 실시간 연동, 협력사까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
Lv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 정보가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하고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 하여 의사결정 실시
Lv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를 디지털화(전산데이터)하는 수준 : 바코드, RFID 등으로 생산정보를 수집하고 제품생산단위(LOT)별로 생산과정 파악 -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ICT 미적용 *스마트공장 미적용	수기작성
	-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엑셀 정도 활용

【참고자료 1】

스마트 공장

□ **(정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 생산과정을 컨트롤하고, 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 ➡ 최소 비용·시간으로 최적의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함

□ **(구분)** 지능화 수준에 따라 'Level 1~2→Level 3→Level 4→Level 5' 5단계 구분

< 스마트공장의 제조단계별 모습 >

기획 설계	▪가상공간에서 제품성능을 제작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제작기간 단축 및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 제품 개발
생산	▪설비-자재-관리 시스템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다품종 제품생산 및 에너지·설비효율 제고
유통 판매	▪생산 현황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로 재고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품질. 물류 등 全분야 협력 가능

□ **(범위)**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 시장 수요 예측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들을 포함

○ 수직적으로는 현장자동화, 제어자동화, 응용 시스템의 영역까지 모두 포함

□ **(수준별 정의)** 스마트공장은 기업 별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며, 기업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 공장의 ICT기술 활용정도·역량에 따라 Lv1~2 - Lv3 - Lv 4 -Lv5로 구분

□ **(스마트공장과 공장자동화의 차이)**

구분	스마트공장	공장자동화
개념	제조 관련 조달,물류,소비자등의 객체가 존재하여 객체에 각각 지능을 부여하고 이를 IoT로 연결해 자율적으로 데이터 연결·수집·분석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하여 공장 전체의 무인화를 이루고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만드는 시스템
특징	제조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맞춤형제품 생산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제조, 해석 시스템, 다품종 소량생산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 등을 조합
통합방향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지원기술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 제조 빅데이터 기술 등을 포함	CAD/CAE등의 PLM 솔루션, 3D프린터, CPS, 공정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

< 주요국의 스마트공장 개념 정의 >

국 가	정 의
독일 (Industry 4.0 정의)	-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全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 *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 정보화되고, 가치 사슬 전체가 실시간 연동되는 생산체계를 구축
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 정의)	-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노동력, 재료, 에너지의 활용을 최적화하며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때 생산하고, 시장수요 및 공급체인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장 *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장내 설비와 기계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계들의 능동적 의사결정이 이행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화 확대

일본 (스마트제조지원단 정의)	-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공정설비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산시스템
중국 (중국 제조 2025 전략 정의)	- 인터넷플러스 중 IoT+협동제조시스템, IoT+고효율 물류 시스템, IoT+AI 기반의 시스템을 갖춘 공장 * 제조업에서는 ICT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첨단 스마트설비 및 관련 기술 국산화 수준 제고, 인터넷 인프라 개선

【참고자료 2】

디지털 클러스터 개요

□ **사업목적**

○ 기업별로 분절된 기존 스마트공장과 달리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 및 상생협력을 통해 제조경쟁력 향상 및 시너지 창출

□ **추진방향**

◆ 업종별(예:부산 전기차) 가치사슬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5G 등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형 물류시스템을 함께 구축 → 클러스터化

* 생산계획 공동수립, 실시간 공정 최적화, 자재 공동발주, 재고·물류비용 최소화 등→ 다수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단일기업의 스마트공장처럼 유연하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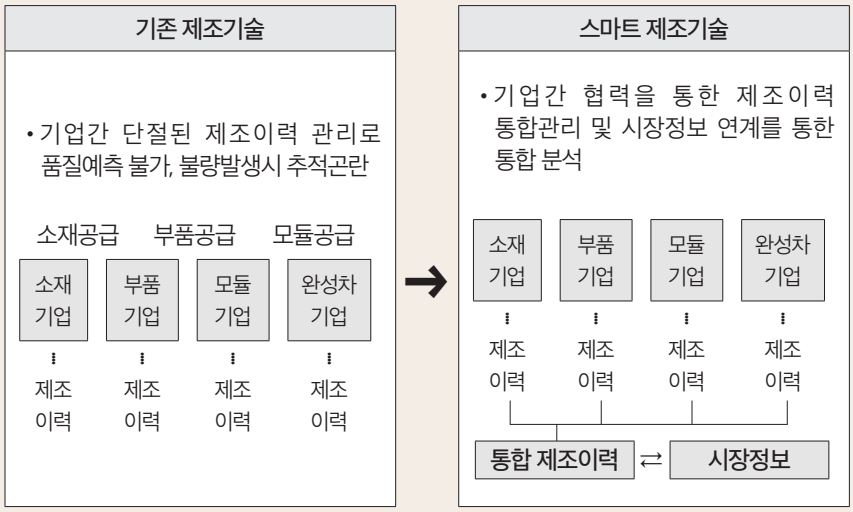
◆스마트공장(제조시스템)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조성에 수반되는 데이터센터, 통합운영시스템 등 공통기반을 함께 구축

❶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LG전자 사례)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협력기업 전체의 생산 최적화를 위해 SCM(공급망관리)을 활용하여 공정 데이터 연결

❷ **(데이터센터·플랫폼)** AI기반 공정별 데이터 분석·예측, 단위 스마트공장 간의 시스템 통합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생산 시스템 구축

❸ **(스마트 물류시스템)** 단위 스마트공장 및 클러스터 내 물류 자동화와 재고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제조기술
• 기업간 단절된 제조이력 관리로 품질예측 불가, 불량발생시 추적곤란
소재공급
부품공급
모듈공급
소재 기업
부품 기업
모듈 기업
완성차 기업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스마트 제조기술
•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제조이력 통합관리 및 시장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분석
소재 기업
부품 기업
모듈 기업
완성차 기업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제조 이력
통합 제조이력
시장정보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13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1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6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산 · 울산 · 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33	소방조직법안
		3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7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40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4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5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4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인공지능 · 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5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5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O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68호



양 정 숙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위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등).

참고자료

< SBS 및 지역민방 재허가 조건 중 대주주 관련 내용 >

구분	내용	부과(적용) 시기
지역 민방 (9개사)	o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관련 보도와 관련 프로그램 방송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9년 재허가('20.1월부터 적용) : 광주·울산·전주·제주·청주·TBC·G1 · `20년 재허가('21.1월부터 적용) : 대전·KNN
SBS	o TY홀딩스 지배주주(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 TY홀딩스 지배주주(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 관련 보도, 방송프로그램, 협찬, 광고 관련 사항을 방송관련 학회 등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받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년 재허가 ('21.1월부터 적용)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649호



이 용 빈

선 거 구	광주 광산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5.19.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삼차원프린터 사용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은 부족한 상황임.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삼차원프린팅사업자 및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6호 신설).

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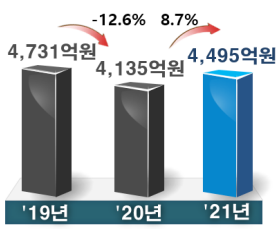
라. 삼차원프린팅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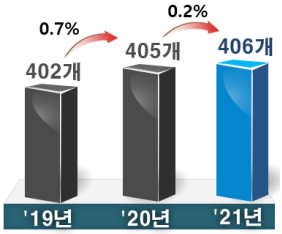
참고자료

<국내 삼차원프린팅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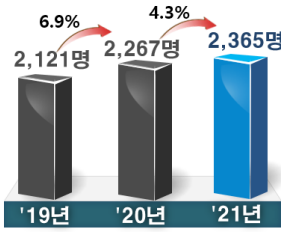
<매출 규모>



<업체 수>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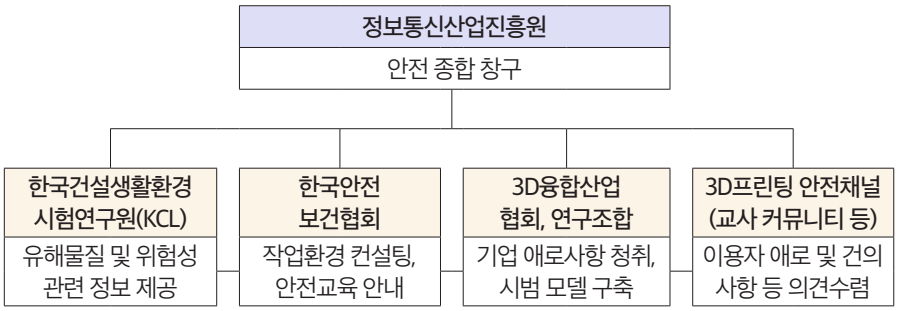


자료 :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NIPA, '21.11월)

<3D프린팅 작업 및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권장사항>

구분	필수 안전수칙	권장 사항
안전한 장비·소재 사용	<장비> • 밀폐형 프린터는 유해물질 저감 필터가 부착된 장비 사용 • 개방형 프린터 사용 시 국소배기장치, 밀폐 부스 등 안전설비 구비 <소재> • 조달 대상 소재,제조사 지정 소재 사용	<장비> • 개방형 프린터는 미세입자·VOC 모두 저감하는 복합필터가 부착된 밀폐형 프린터로 교체 <소재> • 교육기관 등에서 실습용으로 PLA 소재를 사용하며, 타 소재 사용 시 전문 업체 활용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분리된 공간에 3D프린터 설치 • 분리 공간은 외부 신선한 공기가 잘 혼합되는 곳에 마련 • 작업환경 유형 별 안전모델 제시 * 작업장 유형 별 환기장치 설치, 3D프린터 등 공간 배치 원칙 등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시스템 모두 설치 * 덕트 등 국소배기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활용 * 환기시설 설치시 전문가 컨설팅 이용
안전한 이용행태 준수	• 안전교육 이수 및 가이드라인 숙지 • 방진 마스크 착용 • 3D프린팅 작업 중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후에도 1시간 이상 환기 • 3D프린팅 작업공간 상주 금지	• 현장교육·방문교육 이수 • 필터 부착(유해물질 여과) 방진 마스크 착용 • 헤파필터 청소기로 3D프린터 내부 청소 • 웹캠을 설치하여 프린터 작동 중 작업실 출입 없이 작업 상황 모니터링

<3D프린팅 안전센터 추진 체계>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19호



김 의 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27.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다.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28호



김 종 민

선 거 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27.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국내 · 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 ·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 · 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의14)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안 제4조제2항의9)

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안 제44조제4항)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4조의2제1항).

마.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안 제44조의2제3항).

바.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안 제44조의2제4항 및 6항).

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10).

아.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안 제44조의10제6항).

자.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안 제 44조의12).

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안 제 44조의13).

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1항의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015호



송 석 준

선 거 구	경기 이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16.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 ·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 대학 ·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 및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설 · 증설 제한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된 대학 및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

참고자료

[표 1]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의견 정리

관련 기관명	의견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현행**처럼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 * 인구: ('06)48.4%→('21) 50.4% GRDP:('06)49.5%→ ('20) 52.5% **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증설은 현행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 필요 * 현재도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는 자유롭게 공장 신증설 가능,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서도 중소기업은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 가능
전라남도	• 개정안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오히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바꿔버림 •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전략산업 명분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책이 무력화되어 결국 수도권에 과도한 산업과 인구 집중을 유발하게 될 것임
광주광역시	• 개정안 제16조제3항에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 내 공장 신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남.

[표 2]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정리

관련 기관명	의견 주요내용
교육부	• 교육부는 고등교육 총괄부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적극 공감 • 다만, 동 법률 조항에서는 정부가 사업 추진으로 대학을 설립·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만 제시하고 있어, 설립·이전의 주체, 추진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대학의 설립은 국가 균형 발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이전 시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음

국토 교통부	• 특화단지 내 대학의 신설 및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시 각 권역 내의 학교 신·증설 규제 배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 제35조제1항제1호 삭제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권역 간 일반대학 이전을 금지 •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교육부의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접근 필요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교육부 주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 개정안 제35조제1항제1호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대 대학의 특화단지로 이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임 •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모든 전략산업에도 이와 같은 예외규정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설·증설 제한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조항임
광주 광역시	• 개정안 제35조제1항제1호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대 대학의 특화단지로 이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임. • 개정안 제35조제1항제1호가 목적으로 하는 전략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조항을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짐. • 현행법 제35조제1항 각호 조항에 추가하여 개정안 제35조제1항 제1호를 별도 규정할 필요성은 적은 반면, 개정안 제35조제1항 제1호 규정 신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역소멸 가속화 등의 위험성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870호



정 태 호

선 거 구	서울 관악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10.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기업)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 경영상 정보를 탈취 · 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 · 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유사 영역을 다루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행위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임.

한편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권리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 번 외부로 유출되면 확산이 쉬울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손상을 입기 때문임.

이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자료

[표 1] 해외 사례: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강화

국가명	형사처벌 관련 규정
미국	• 경제스파이처벌법 개정('13), 연방영업비밀보호법 제정('16), - **영업비밀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 벌금, 영업비밀 유출자가 **기업 등 기관인 경우 1천만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절취한 영업비밀 **이익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손실을 고려한 벌금, 영업비밀 유출자가 기업 등 **기관인 경우 5백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일본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15)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양벌규정) 10억엔** 이하의 벌금(행위자 벌금의 33배 수준) -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 양벌규정)** 5억엔 이하의 벌금(행위자 벌금의 25배 수준)

자료: 특허청

[표 2]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 비례 벌금형 부과 입법례1

구분	외국공무원등	법인
국제뇌물방지법 제4조(양벌규정)		
제3조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807호



홍 정 민

선 거 구	경기 고양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참고자료

현행법상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법 제36조)

침해행위 유형(14조)	일반 법정형	해외 유출 목적	
		국가핵심기술을 제외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 15억원 이하 벌금(병과)
2호			
3호			
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5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6호	-		
6호의2	-		
6호의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호			
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산업기술 유출 건수	25건	24건	20건	14건	17건	22건	8건	130건
국가핵심기술	(8건)	(3건)	(5건)	(5건)	(9건)	(10건)	(4건)	(44건)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이차전지등)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생명공학	기타	합계
유출건수	21	21	29	15	9	9	5	21	130

구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대학, 연구소)	합계
유출건수	43	76	11	1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기술 유출 관련 국내외 주요 규정

구분	관련 법령	주요 처벌내용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 + 해외 유출 목적 입증 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산업기술 침해행위 + 해외 유출 목적 입증 시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 + 해외 유출 고의성 입증 시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 + 해외 유출 목적 입증 시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국외	美 경제스파이법	외국정부 등에게 이익이 됨을 알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불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獨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 해외 유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日 부정경쟁방지법	국외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국외 사용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산업기술 유출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 3천만엔 / 기업 10억엔 이하의 벌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개정안 관련 민간 기업 제출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 ('22.06.16)	• **찬성(개정 필요)**
제노스 ('22.06.17)	• **찬성(개정 필요)** - 다만, 손해 발생 및 사용될 것을 인지하는 행위 모두가 비의도적일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에 유의 필요함.

기아 ('22.06.17)	• 찬성(개정 필요) - 현행은 명시적인 목적성이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유출이 발생했을 시 행위자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처벌로까지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개정안은 정황상 유출자가 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할 수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 부경법 제18조제1항과 문구 일치를 통한 일관성 향상 효과도 존재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22.06.17)	• 찬성(개정 필요)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동의
카네비컴 ('22.06.17)	• 찬성(개정 필요)
㈜테크로스 ('22.06.17)	• 찬성(개정 필요)
현대로템 ('22.06.20)	• 찬성(개정 필요) -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요건이 과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입증 요건을 완화하여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 공포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공포 즉시 적용이 필요함.
SK온 ('22.06.20)	• 찬성(개정 필요) -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해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엘앤에프 ('22.06.20)	• 찬성(개정 필요) - 이전보다 용어 및 반드시 해당 법을 따르라는 의지가 명확해 지는 것 같음
LG유플러스 ('22.06.20)	• 찬성(개정 필요) -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 없음
㈜엔에프 ('22.06.20)	• 찬성(개정 필요) - 핵심기술 유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고조 -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의 유출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핵심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각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한국전기연구원 ('22.06.21)	• 찬성(개정 필요) - "사용되게 할 목적과 무관하게"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므로 찬성 의견
파나시아 ('22.06.21)	• 찬성(개정 필요) - 기술 유출의 인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 할 수 있음
삼성SDI ('22.06.21)	• 찬성(개정 필요) - 입증요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 필요
현대자동차 ('22.06.21)	• 찬성(개정 필요) - 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고도 처벌 가능하므로, 유출 시도에 대한 사전방지 및 기술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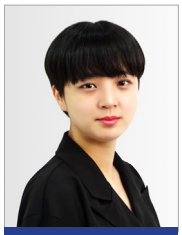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22.06.22)	• 찬성(개정 필요) - 기존 문구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로의 수정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국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삼성디스플레이㈜ ('22.06.22)	• 찬성(개정 필요)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모두 기술유출이나 침해행위 금지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법적요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SK하이닉스㈜ ('22.06.22)	• 찬성(개정 필요) - 기술유출 강화 차원의 개정안으로 이견 없으며 찬성함
포스코 ('22.06.23)	• 찬성(개정 필요)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기존 대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입증요건 완화 효과가 있으므로 산업기술 보호 강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821호



류 호 정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08.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 및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정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제28조제5항제2호).

나.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2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4호 신설).

참고자료

【참고자료】관계 기관 의견

참고 1.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 추가 및 시정명령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4호,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3호) 관련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외교부 ('22.6.24.)	•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BIT, 84개국과 발효)상 비차별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 가능 - 기체결 BIT상 대부분의 예외는 국가안보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련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부 FTA 서비스투자과 ('22.7.5.)	• 내국인 대비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일정한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포함), 한미, 한호, 한캐, 한뉴 FTA, RCEP 등의 투자챕터상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위반 소지 • 한미, 한호, 한캐, 한뉴FTA, RCEP 등의 부속서 II(미래유보)는 공공질서에 한정하여 외투 제한·조건 부과를 허용하는바, 고용안정 관련 외투 제한·조건 부과는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 높음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 ('22.7.6.)	•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법 그 자체로(as such) WTO GATS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 • 개정안은 WTO GATS 예외(일반예외 또는 안보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22.6.28.)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로 고용안정 관련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반박이 불가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현저히 지장을 줄 소지

참고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시 감면받은 금액 전부·일부 납부 및 감면 임대료의 2배 이하 추가 징수(안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관련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외교부 ('22.6.24.)	• 여타 법령상 동종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국인은 비차별 대우 위반 주장 가능

산업부 투자유치과 ('22.6.27.)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정감면 환수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9조에서 규정되어 기운영 中 • 징벌적 추가징수 조항은 외투지역에만 적용되어 일반 국공유지 임대차의 경우와 형평성 위반 소지

ㅇ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22.6.28.)	• 급변하는 사정 변경에 따라 기업전략 수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부정수급 관련 판단이 모호할 소지 • 징벌적 추가 징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할 우려

참고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 시 지원금의 2배 이하 금액 추가 징수(안 제1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관련

ㅇ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외교부 ('22.6.24.)	• 여타 법령상 동종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외국투자가는 비차별 대우 위반 주장 가능
산업부 투자유치과 ('22.6.27.)	• 현금지원제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법인세 감면 폐지('19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 • 타법(보조금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이 가능함에도 외촉법상 환수 이상의 제재부가금 부과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투자장벽에 해당할 소지 • 현금지원 부정수급의 경우 취소·철회, 감액·환수제도 기 운영 중 - 외국인투자가는 투자기간 및 사업영위기간까지 10년간 투자 및 고용 이행 의무 유지 - 법령·운영요령, 계약서에 따라 최대 현금지원금 전액 및 이자, 부대비용에 대해 환수조치 가능

ㅇ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22.6.28.)	• 급변하는 사정 변경에 따라 기업전략 수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부정수급 관련 판단이 모호할 소지 • 징벌적 추가 징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할 우려

참고 4.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 노조로부터 추천받은 2명 추가 (안 제27조제2항제4호 신설) 관련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행안부 ('22.06.20.)	• 외투기업의 인센티브, 외투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등 정부 내부의사결정은 외부에 공개되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참여 없이 정부위원회로 운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남설 방지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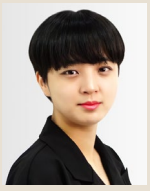
○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22.6.28.)	•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되는 외투지역 지정 안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외투기업이 유연한 노동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들어 한국 투자에 장애요소로 될 소지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류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전횡에 맞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폐해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IMF 금융위기 이래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다투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철수, 폐업을 통한 먹튀 행각, 기술 탈취,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 등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문제는 매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 경제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이 법안은 첫째, 외국인 투자 제한사유에 고용안정 사항을 더했습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투자 제한사유에 추가해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불법·부당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이미 지원한 내역의 환수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및 현금성 지원 등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길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기업적 산업적 관점만을 고려한 인원으로만 모두 채워 있습니다. 노동

자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시 고용과 노동정책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산연의 위장 폐업과 먹튀로 724일 넘게 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했습니다. 영업이익 130억 원 중 설비투자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했지만 배당은 110억 원에 달했던 한국게이츠는 공장을 폐업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와이퍼의 기획 폐업으로 수백 명이 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이 한국 노동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정부와 국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전횡 가능성에 분명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노동자를,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193호



정 우 택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5선(15대, 16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29.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이 중단되고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기 중견기업들은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시기보다 매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참고자료

[표 1] 2021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기업(신규) 업종별 현황

구분	제조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합계
기업수	98개	7개	24개	33개	26개	49개	237개
비중	41.4%	3.0%	10.1%	13.9%	11.0%	20.7%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2] 2021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기업(신규) 매출액별 현황

구분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8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1,200억원 이상	평균
기업수	74개	38개	26개	52개	47개	784억원
비중	31.2%	16.0%	11.0%	21.9%	19.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3] 2016~2020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 수	23개사	40개사	89개사	50개사	69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관련 국정과제

① 과제 개요

□ 추진 필요성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로서 **생산활동** 및 **일자리**의 **기반**이나,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그 수가 **급감***하는 등 **성장성 취약**

* 소상공인 644.2만개, 소기업 34.4만개, 중기업 10.1만개, 중견·대기업 7,675개('19)

○ **중소기업 정책·사업** 전반을 **재평가**하여 **성장**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 필요

□ 과제 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 견인

② 과제 세부내용

□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 중견기업 진입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 탈피**를 위해 '중소 →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검토(~'23년)

10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203호



노 웅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12.	제안
상임위원회	2022.08.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 및 제13조의6 신설 등).

참고자료

[표] 국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추이

(단위 : 만톤,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폐기물 사용량(A) *대체원료+보조연료	559	614	665	700	744	809	808	905
시멘트 생산량(B)	4,705	5,204	5,651	5,740	5,209	5,064	4,752	-
비율 (A/B)	11.9	11.8	11.8	12.2	14.3	16.0	17.0	-

자료 : 환경부

[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평균 검출 함량(2021. 1.~2021. 12.)

(단위 : mg/kg)

구분	6가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납
중금속 평균 함량	7.63	9.96	-	148.11	0.02	46.36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멘트 제품 중금속 · 방사능 분석결과, 2021. 1.~ 2021. 12.

※ 참고자료

1. 시멘트 업계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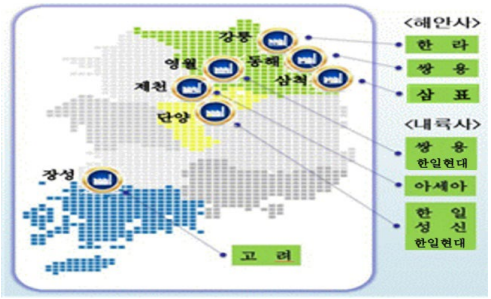
□**(업체현황)** 석회석 채광에서부터 완제품인 시멘트를 제조하는 설비까지 갖춘 **9개 업체** (11개 공장) 가동 중

업체명	지역	소성로	클링커 생산량 (톤/일)	업체명	지역	소성로	클링커 생산량 (톤/일)
쌍용 양회	동해	7	33,800	성신	단양	4	24,600
	영월	3	7,760	한일	단양	6	22,300
삼표	삼척	7	23,000	아세아	제천	3	11,700
한라	강릉	4	20,100	유니온	청주	1	400
한일 현대	영월	2	12,000	고려	장성	1	2,400
	단양	1	4,500	**합계**		**39**	**162,560**

□**(매출액)** 약 **5조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0.3%, 비금속 광물의 14.1% 차지

○ 전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420백만톤(2019년 기준)이며, 국내 생산량은 51백만 톤 규모로 중국, 인도, 미국 등에 이어 세계 11위 수준

□**(사업장분포)** 시멘트 주원료는 석회석(원료의 약 89%)으로 시멘트 제조공장은 석회석이 풍부한 강원, 충북지역에 위치

사업장 분포		시멘트공장 위치도
구 분	공 장(지역)	
강 원	- 삼표시멘트(삼척) - 쌍용C&E(동해, 영월) - 한라시멘트(강릉) - 한일현대시멘트(영월)	
충 북	- 한일시멘트(단양) - 성신양회(단양) - 한일현대시멘트(단양) - 아세아시멘트(제천)	
전 남	- 고려시멘트(장성)	

1) 출처: 환경부

2.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 현황[2]

□ 순환자원 사용현황

(단위 : 천톤)

용도	종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체원료	점토질	석탄재	2,709	2,804	3,150	3,179	2,792
		오니류	1,942	2,083	2,051	2,315	2,627
		기타(광미 등)	279	190	308	591	330
	규산질	폐주물사	573	654	563	606	610
	소 계		5,503	5,731	6,072	6,691	6,359
보조연료	폐합성수지		784	858	915	1,016	1,407
	폐타이어		258	263	286	275	186
	폐고무류		51	115	70	76	88
	폐목재 등		57	30	92	35	39
	소 계		1,150	1,266	1,363	1,402	1,720
합 계			6,653	6,997	7,435	8,093	8,079

□ 시멘트생산량 대비 폐기물투입량

(단위 : 천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멘트생산량	56,507	57,400	52,093	50,635	47,518
폐기물량(대체원료+보조연료)	6,653	6,997	7,435	8,093	8,079
비율	11.8%	12.2%	14.3%	16.0%	17.0%

3.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관련 기준[3]

(단위 : mg/kg)

항 목	EU	한국	일본	스위스
Cr(total)	-	-	-	250
Cr(VI)	2 mg/L	20	20	-
As	-	-	-	15
Cd	-	-	-	5
Co	-	-	-	125
Cu	-	-	-	250
Ni	-	-	-	250
Pb	-	-	-	250
Sb	-	-	-	15
Sn	-	-	-	50
Tl	-	-	-	50
Zn	-	-	-	750
구분	법적기준	자율협약	자율협약	법적기준

2) 출처: 환경부

3) 출처: 환경부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O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7264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09.07.	원안가결
	2022.09.08.	정부이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 비하여 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도율을 보다 저렴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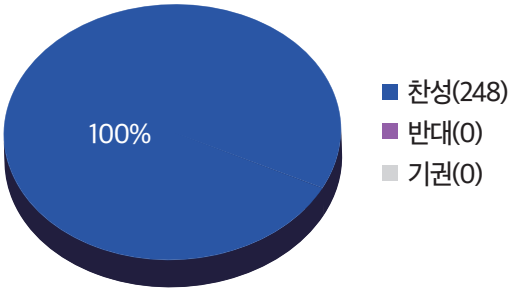
이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건)

[21167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21160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9.06 / 2022.09.07
■ **발의자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48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48인(찬성 248인, 반대 0인, 기권 0인)





찬성 (248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 웅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영순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9월호는 2022.8.15.부터 2022.9.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9월1일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2일	13일	14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국회본회의														● 제400회 제1차				● 제400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						●									
교육위원회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환경노동위원회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											
정보위원회						●	●					●											
여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			●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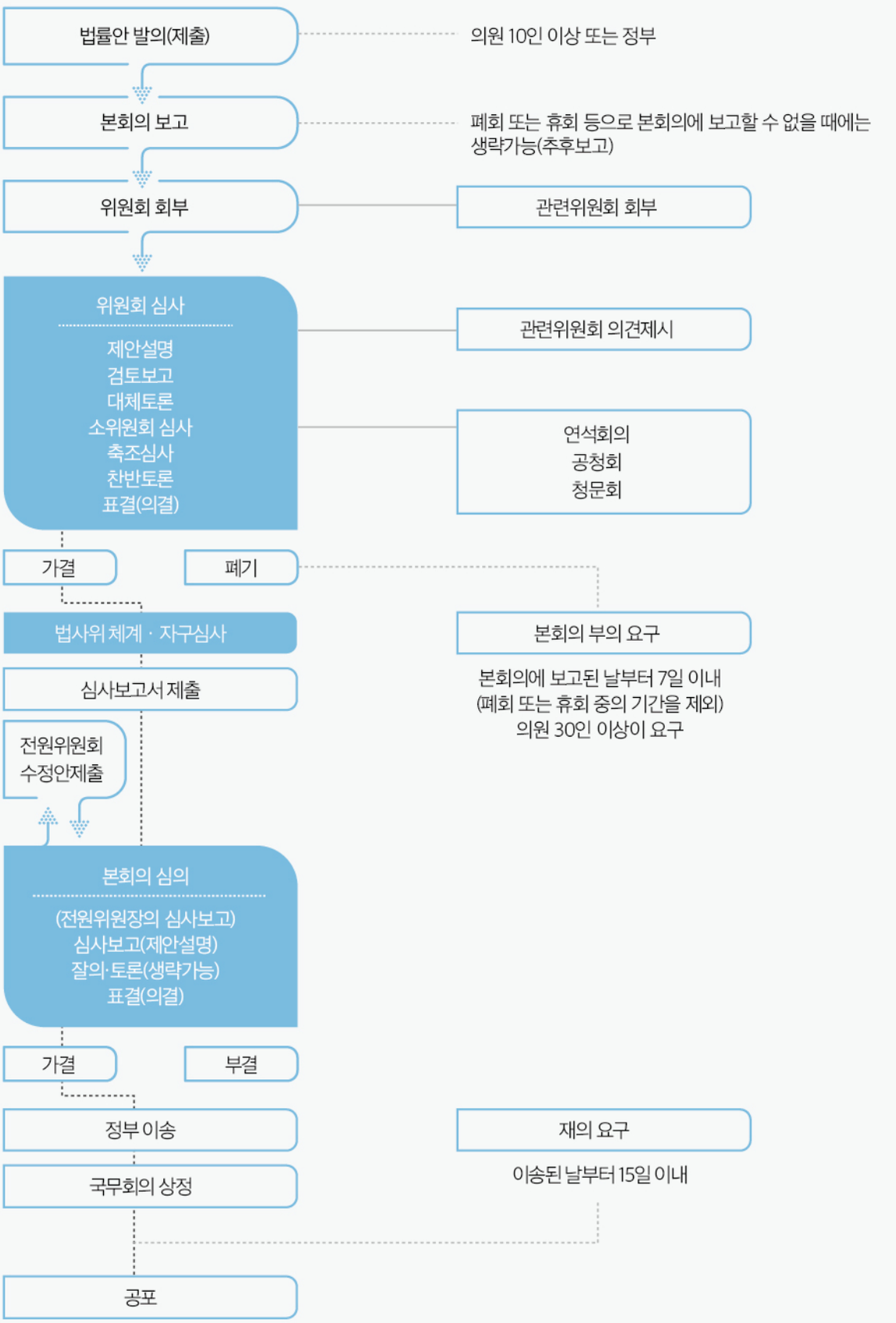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7,8, 10-16층)
www.draju.com